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제7차 정기총회 식순

제7차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의안확정
- 서기 및 의사록날인 선출
- 의안심의

  의안 1호) 2021년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사업감사보고서 승인

  의안 2호) 2021년도 결산(안) 및 회계감사보고 승인

  의안 3호) 이사장및회계감사 보궐선출

  의안 4호) 2022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의안 5호) 2022년도 예산(안) 승인

  의안 6호) 기타안건

- 의사록 채택
- 폐회선언

별첨1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

별첨2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총회운영규약

별첨3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정관

별첨4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별첨5 제7차 정기총회 조합원명부

별첨6 21년도 5년이상 근속장려 포상자 명단

「의안 1호」

21년 사업평가(안) 및 사업감사보고 승인

■ 주문사항 : 2021년도 사업결과 및 평가(안)과 사업감사 보고를 심의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2021년 사업결과보고(안)

21년도 협동조합 조직현황보고

1. 조합원현황

(21.12.31. 현재 단위:명)

구 분	조합원수	성별		직원 조합원	후원 조합원	자원봉사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	취약 계층비율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
		남	여								
단위/명	158	11	147	144	7	5	0	2	118	0	16
비율(%)		7	93	92	5	4		2	75	0	

2. 직원현황

(2021.12.31.현재 단위:명)

구 분	전체 직원	성별		사업단내부 겸직직원수	휴직자수	타기관 겸직
		남	여			
단위/명	257	18	239	32	7	46(장애,한결)
비율(%)	100	7.0	93.0	12.5	2.7	17.8

3. 취약계층 고용현황

(2021.12.31현재, 단위명)

구 분	채용자수	고용율
고령자	174	72.3%
저소득층	5	
장애인	7	
합계	186명 / 257명중	

4. 연도별 사업단별 직원현황 (연평균)

(2021.12.31.현재, 겸직자포함.단위명)

사업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91	81	82	82	72	72	75	53
노인돌봄	사업중단	사업중단	32	35	36	34	37	32
장애인	141	134	128	125	108	104	80	54
가사간병	13	12	13	15	14	12	14	14
발달주간/방과후	4	4						
주야간보호	10	5						
일시재가	16	7						
총계	**275**	**243**	**255(212)**	**257**	**230**	**222**	**206**	**153**

5. 직원 거주지역별 현황

(2021.12.31.현재, 겸직자포함,단위명)

사업명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시내	경기도	합계
장기요양	66	18	2	7		2	95
가사간병	13	1					14
장애인	107	24	5	10	5	3	154
발달주간/방과후	2		1			1	4
주야간보호	8	1	1				10
일시재가	8						8
총계	**204**	**44**	**9**	**17**	**5**	**6**	**285**

6. 직원 연령분포

(2021.12.31.현재, 겸직자포함,단위명,%)

사업단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장기요양			2	30	47	16	95
가사간병				2	9	3	14
장애인	3		18	64	66	3	154
발달주간/방과후		1	1	2			4
주야간보호		1	1	4	4		10
일시재가			1	2	1	4	8
전체	**3**	**2**	**23**	**104**	**126**	**26**	**285**
21년도비율	**1.0**	**0.7**	**8.1**	**36.7**	**44.3**	**9.2**	**100**
20년도비율	**1.3**	**1.3**	**9.1**	**39**	**41.5**	**7.8**	**100**
19년도비율	0.9	1.4	13.2	42.5	36.8	5.2	100
18년도비율	0.9	1.4	15.8	42.6	34	5.3	100
17년도비율	0.5	0.9	17.7	46.0	31.6	3.3	100
16년도비율	0.5	1.1	20.1	47.1	27.5	3.7	100
15년도비율		0.1	17.7	51.0	26.3	4.9	100
14년도비율		1.1	21.0	54.5	21.0	2.4	100

7. 근속연수 분포

(2021.12.31.현재, 겸직자포함,단위명,%)

사업단명	1년미만	1~2년	3~4년	5~6년	7~9년	10년~	합계/명
장기요양	22	22	24	11	14	2	95
가사간병	2	2	5	1	3	1	14
장애인	34	40	36	22	17	5	154
발달주간/방과후	1	2	1				4
주야간보호	3	4	1		1	1	10
일시재가		3		1		4	8
전체	**61**	**73**	**67**	**35**	**35**	**13**	**285**
21년도비율	**21.4**	**25.8**	**23.6**	**12.3**	**12.3**	**4.6**	**100**
20년도비율	**20.3**	**24.1**	**20.7**	**17.7**	**10.3**	**6.9**	**100**
19년도비율	15.1	34	17.9	17.9	7.1	8.0	100
18년도비율	13.4	35.4	25.4	10.0	8.1	7.7	100%
17년도비율	26.5	27.9	26.0	7.4	4.7	7.5	100%
16년도비율	22.7	42.9	13.7	8.5	6.9	5.3	100%
15년도비율	23.6	43.3	11.5	8.2	7.2	6.3	100%
14년도비율	46.1	25.5	12.8	10.6	1.4	3.5	100%

8. 근로시간 분포

(2021.12.31.현재,퇴사자포함,가족요양전담자포함)

사업단명	60시간미만	60이상~80미만	80이상~120미만	120이상~160미만	160시간이상	합계
통합	28	19	43	59	100	249
21년도비율	**11.2**	**7.6**	**17.3**	**23.7**	**40.2**	**100**
20년도비율	**11.8**	**6.6**	**21.0**	**17.5**	**43.1**	**100**
19년도비율						
18년도비율	12.2	7.4	25.7	22	32.7	100
17년도비율	4.9	14.5	30.2	19.0	31.4	100%
16년도비율	3.2	10.9	33.6	20.9	31.4	100%
15년도비율	9.7	13.3	33.2	16.3	27.6	100%
14년도비율	7.3	12.2	39.0	13.8	27.6	100%

120미만자 91명(36.4%), 120시간이상자 159명(63.6%), 전체평균 근무시간 134.2시간

9. 급여수준 분포

(2021.12.31.현재,퇴사자포함,가족요양전담자포함)

사업단명	60만원미만	60만원 ~90만원미만	90만원 ~120만원미만	120만원 ~150만원미만	150만원 이상~	합계
통합	18	8	44	27	152	249
21년도비율	**7.2**	**3.2**	**17.7**	**10.9**	**61.0**	**100%**
20년도비율	**6.1**	**8.3**	**17.5**	**19.2**	**48.9**	**100%**
19년도비율						
18년도비율	10.2	18	17.1	18	36.7	100%
17년도비율	12.4	28.1	18.6	17.3	23.6	100%
16년도비율	12.2	31.4	20	36.4		100%
15년도비율	14.8	40,8	13.8	30.1		100%
14년도비율	13.8	45.5	11.4	29.3		100%

21년도 평균급여 1,643,528원

9-1 150만원이상자 급여분포

사업단명	150만원이상 ~170만원 미만	170만원이상 ~190만원 미만	190만원 이상 ~210만원 미만	210만원이상 ~230만원 이만	23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이상 280만원 미만	280만원 이상
통합	19.5	33	38	24.5	22.5	9.5	4.5
평균금액	1,625,735원	1,804,334원	2,005,597원	2,200,610원	2,395,874원	2,654,904원	3,108,024원
평균 근로시간	136시간	153시간	174시간	184시간	196시간	210시간	240시간

10. 신규직원 입사경로

(2021.12.31.현재)

사업단명	인원	입사동기 및 사유				
		직원권유	주변(이용자)소개	인터넷등	공채	자진(재)입사
장기요양	24	8			5	11
가사	2					2
장애인	32	8	8			16
발달주간	1	1				
주야간보호	4	2			2	
일시재가	0					
전체	**62**	**17**	**10**	**0**	**6**	**29**

11. 퇴사직원 사유

(2021.12.31.현재)

사업단명	인원	퇴사사유					
		건강문제	업무부적응	이용자미연계	동종업종이직	개인사정	타업종이직
장기요양	7	2		1	4	1	1
가사	1					1	
장애인	20	2			6	12	
발달주간	0						
주야간보호	1				1		
일시재가	4	1			2		1
합계	**35**	**5**		**1**	**13**	**14**	**2**

1년미만: 20명, 1년차 : 6명, 2년차 : 2명, 3년차 1명, 4년차 1명, 5년차 1명, 6년차 1명, 7년차 2명, 8년차 1명

12. 이용자현황 (연도별 평균)

(2021.12.31현재)

사업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116	115	106	108	98	94	87	62
노인돌봄	사업중단	사업중단	44	54	65	67	66	71
장애인	155	150	152	150	136	116	87	60
가사간병	19	16	21	21	17	13	20	25
발달주간	8	7						
발달방과후	3	3						
주야간보호	23	11						
일시재가	20	30						
총계	**344**	**332**	**323**	**333**	**316**	**290**	**260**	**218**

13. 서비스 시간 (연도별 월평균)

(2021.12.31현재)

사업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장기요양	6,858	6,271	6,560	6,689	6,304	6,996	6,513	4,580
가사간병	444	445	1,437	1,696	1,829	1,989	1,891	2,056
장애인	21,288	22,698	22,175	22,000	18,940	16,633	12,459	8,443
발달주간	954	339						
발달방과후	84	81						
주야간보호	3,054	1,760						
일시재가	388	641						
총계	**33,070**	**32,235**	**30,172**	**30,385**	**27,073**	**25,618**	**20,863**	**15,079**

14. 이용자 보장구분

(2021.12.31.현재)

사업명	기초수급자	차상위(경감)	일반	합계
장기요양	41	34	45	120
가사간병	21			21
장애인	91	15	56	162
발달주간	7		1	8
발달방과후			3	3
주야간보호	4	3	16	23
일시재가	9			9
총계	**173**	**52**	**121**	**346**
비율(%)	**50%**	**15%**	**35%**	**100%**

15. 거주지별 이용자 현황

(2021.12.31현재)

동별구역	번1	번2	번3	삼각산	삼양	송천	미아	송중	수유1	수유2	수유3
인원/명	8	8	54	30	18	18	13	7	30	28	6
동별구역	인수	우이	도봉	노원	성북	서울시내		경기권		총합계	
인원/명	52	20	18	13	12	8		3		346	

* 강북구상위지역순 : 번3동-인수동-삼각산동-수유1동-수유2동

16. 이용자 입소경로

(2021.12.31현재)

사업단명	입소총계	사유별 입소자수				
		사업단이관	직원권유	타기관(주변)의뢰	구청(안내문)	재입소
장기요양	49	15	19	3	10	2
가사간병	8				8	
장애인	37	7	2	3	20	5
발달장애	5				5	
주야간보호	14	3	6	3	2	
일시재가	110				87	23
전체	**223**	**25**	**27**	**9**	**132**	**30**

17 . 이용자 퇴소사유

(2021.12.31현재)

사업단명	퇴소총계	사유별 퇴소자수					
		사망	시설및병원입소	서비스변경 (타기관이관)	직원 매칭못함	서비스 불만족	기타
장기요양	51	11	23	2	3	2	10
가사간병	5						5
장애인	31	4	4	18	2		3
발달장애	5			1			4
주야간보호	6	1	3	2			
일시재가	110			22			88
전체	**208**	**16**	**30**	**45**	**5**	**2**	**110**
합계		**91**			**7**		**110**
비율		**43.8**			**3.4**		**52.8**

2021년도 세부추진사업 결과보고

2021년도 핵심사업 추진 방향

Ⅰ. 조합원의 주체역량 강화와 역할별 교육체계
Ⅱ. 서비스질의 향상
Ⅲ.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강화
Ⅳ. 신규사업의 안정화

세부사업 추진계획

목 적	활 동
1.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말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1-2. 직무교육 운영
	1-3.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1-4. 이용자 조합원의 소통 확대
	1-5.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2.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2-1. 직원 복지 개선
	2-2. 보수 체계 구축
	2-3.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고충 상담
	2-4. 직원 자치 모임 개설 및 확대
3.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한다.	3-1.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3-2. 조합원 유형별·역할별 교육 개설 및 운영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공헌 한다.	4-1.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4-2.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4-3.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4-4. 지역사회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5.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서비스 업종 조직과 소통과 연대한다.	5-1.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5-2.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5-3.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1 조합사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총회

구분	시기	조합원수	참석자수	참석율	주요심의 결과
정기총회	21.03.28 21.04.08	174	131	76%	* 감사보고승인 * 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승인 *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승인 * 4기 임원선출

정기이사회

개최 횟수	참석 대상	평균 참석인원	평균 참석율	주요심의 결과
7회	15	13	87%	* 21년 급여지급계획안 및 정기총회 안건심의 * 근로자대표, 외부임원 선임 * 조합원힐링프로그램 기획, 인사위원회구성 * 팥죽행사기획, 22년 급여지급계획안

부문위원회

회의명	개최 횟수	참석 대상	평균 참석인원	평균 참석율	주요심의 결과
직원권익위원회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개최 못함				
품질향상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장애인사업팀운영위원회

사업명	개최 횟수	참석대상	참석인원	평균 참석율	주요심의 결과
장애인사업팀 운영위원회	2회	8	8	100%	* 20년 사업보고 및 결산심의 * 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

- 사례별 대처 매누얼 개발
- 직무교육 운영
- 돌봄서비스 인수인계노트 활용
- 이용자 조합원의 소통확대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21년도 이용자간담회 결과

날짜	사업단명	참석자수	프로그램
2021. 5월/12월	장애인사업팀	이용자 150명	코로나로 인해 대면 간담회 진행 못하고 안내문 발송함
2021.10.15	장기요양사업팀	이용자 4명	남산 케이블카 투어

21년도 전담인력 및 사회복지사 모니터링 결과

사업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평균(회)
장기요양	32	32	32	33	31	33	33	30	31	32	29	32	31
장애인	4	12	42	42	87	20	17	17	10	133	41	13	37
가사	1	3	2	1	1	21	3	2	2	3	3	21	6
일시재가	34	14	13	16	12	11	7	9	3	9	3	1	11

21년도 월례회의 및 교육 개최 현황

개최월	교육내용 및 회의내용	참여인원	강사 및 진행	교육시간
4월	신입활동지원사 교육	장애18명	사업팀장	2
5월	서면교육	장애143명, 장기85명, 가사13명	사업팀	0
6월	공감노트배포 및 작성법 일지교육 감염예방교육	장애130명, 장기66명, 가사13명	사업팀	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팀공통 240명	한빛예술단공연	1
6~7월	공단직무교육	장기 63명	효성요양보호사 교육원	8
7월	개인정보보호, 성폭력예방, 노인학대예방, 직장내괴롭힘예방	사업팀공통 240명	온라인교육	4

지역자원 연계현황

연계기관	지원물품및종류	사업팀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두유 1BOX	장기요양	송정례외 3명
강북지역보장협의체	화분세트	장기요양	곽영례외 8명
개인후원	이동변기	장기요양	엄순례이용자
개인후원(김년태이용자)	이동변기, 목욕의자	장기요양	임명남이용자
개인후원(김성림사회복지사)	이미용서비스	장기요양	강상석이용자외 2명
한경자요양보호사	덴탈마스크 6,000장	장기요양	근로 요양보호사
강북지역보장협의체	파스	전사업팀	321명
강북지역보장협의체	마스크	장기요양	112명
강북구 라이더단체 지역공헌	도시락	장애,장기	강문환외 56명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샴푸	장애바우처	강문환외 50명
기증품	목욕의자	장애바우처	정문배외 1명
건강의집방문진료	방문진료	장애바우처	김두진외 2명
기증품	실버카	장애바우처	지정자
지역미용실 자원봉사	미용서비스	장애바우처	한두희외 1명
강북지역자활센터	방역서비스	장애바우처	김은경1
기증품(이향숙)	미끄럼방지매트	장애바우처	김두진
기증품(안정열)	세탁기	장애바우처	권미순
동안교회기쁨나눔상자	생활용품상자	장애바우처	김영원외 2명

강북나눔돌봄센터 자체지원

기관명	지원종류	지원금액	사업단
강북나눔돌봄센터 (자체)	설명절선물	16,102,985	사업팀공통
	코로나확진자 물품지원	1,266,120	주야간보호
	방역택시지원	105,000	장기, 장애
	기저귀지원	3,914,600	사업팀공통
	선풍기지원	51,200	장기, 가사
	인지도구지원	24,500	장기
	혈당관리지원	447,268	장기
	청소물품 및 다과지원	229,040	사업팀공통
	세탁기	80,000	장기
	병원비	230,000	장기
합계		**22,220,713**	

3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

■ 세부추진계획

- 직원복지 개선
- 보수체계 구축
-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고충 상담
- 직원자치모임 개설 확대

◉ 소모임운영 확대

활동명	개최횟수	참석인원	개최주기	활동내용
우크렐레 동아리 '줌마렐라'	21회	7명	주1회	* 16년 11월 14일 개설 * 코로나로 인해 줌으로 전환하여 진행
'길' 산행모임	전체모임2회	8명	월1회	* 19년 7월 11일 개설 * 매월 자체 산행 기획하여 진행 * 21년도 전체모임 2회 진행
텃밭동아리	전체모임2회	8명	개인주기	* 21년 3월 19일 * 20년 돌봄 공동텃밭 진행하면서 전환 * 21년도 개별텃밭 분양받아 진행

◉ 직원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사업유형	목적 및 내용	연계기관	시기/개최일	인원	소요금액	합계/원
직원힐링프로그램	야유회 대체	자체	10월	230	12,149,800	20년도 60,733,772 50%증가 18년도 30,304,007 17년대비 -19%감소 17년도 37,398,948 16년대비 23%증가 16년도 30,380,120 15년대비 10%증가 *15년도 27,635,960
설/추석 명절선물지급	보상체계	자체	설,추석	240	20,700,000	
우크렐레, 걷기모임, 텃밭모임	취미활동을 통한 직원의 정서유대강화	자체	연중	26	1,656,520	
경조휴가비지급	보상체계	자체	연중	9	3,372,950	
독감접종	직원질환예방	자체	20.10~11	240	2,315,000	
조합원근속장려포상	보상체계	자체	21.04.15	6	1,200,000	
합계				**751**	**41,394,270**	

직원 건강검진 수검현황

사업단명	대상자수	검진자수	21년 검진율	20년 검진율	19년 검진율	18년 검진율	17년 검진율	16년 검진율	15년 검진율
장기요양	95	92	96.9%	96.3%	100%	100%	84.8%	96%	97%
가사간병	14	14	100%	100%	100%	100%	100%	88%	96%
장애인	154	143	92%	97.7%	98%	99%	92.5%	68%	97%
발달주간/방과후	4	4	100%	75%					
주야간보호	10	10	100%	100%					
일시재가	8	8	100%	42.9%					
전체(%)	**100**	**95**							

4 조합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 조합원 유형별 역할별 교육개설 및 운영

– 교육체계 설계 및 교육개설 진행하지 못함

5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공헌

■ 세부추진계획

-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 지역사회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제5회 지역공헌사업 '장수팥죽나눔' 행사

구 분	지역	수혜자수	참여(직원)봉사자	공동주최	소요예산
제5회 팥죽나눔행사	번2단지	100명	실무자 및 직원 10명	코로나로 인해 행사진행이 어려워 팥떡 제작하여 번2단지 주민배포	3,760,000

위기가정 및 사각지대 무료돌봄서비스 지원 (자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사업팀	장기	일시장기	장기	일시장기	장기	일시장기장애	일시장기
이용자수	2	2	1	2	2	5	4
참여직원수	2	2	1	2	2	5	4
지원금액	**225,310**	**183,810**	**142,300**	**249,030**	**171,950**	**476,720**	**284,610**

구 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사업팀	일시장애	장기,일시	일시장기	장기	장기,장애	
이용자수	3	3	4	1	4	33
참여직원수	3	3	4	1	4	33
지원금액	**320,180**	**450,620**	**343,890**	**142,300**	**626,910**	**3,617,630**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업종 조직과 소통 연대

■ 세부추진계획

-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수유1동 어르신 월요밥상

사업명	개최시기	대상자	참여인력	사업내용
어르신 월요밥상	21.01~ 21.12	수유1동 도시재생 어르신 70여명	월2명	* 매주 월요일 수유1공원 어르신 점심배식 * 강북구 4개 단체 참여 * 매월 센터 실무자 2명 배치

해피에이징 사회적기업 어르신 낙상 위험도 평가 및 예방교육

사업명	개최시기	대상자	참여인력	사업내용
어르신 낙상예방교육	21.11.15	주야간보호 23명	강사2명	* 주야간보호대상자 23명 낙상위험도 평가 * 낙상예방교육 및 보행법 교육

미취업 청년 및 취약계층 우선고용

- 사회복지사 신규인력 청년우선채용 1명
- 21년 신규입사자 59명 중 고령자 44명, 장애인 1명 (취약계층 고용율 77%)

지역통합돌봄 기반 구축을 위한 강북구 돌봄네트워크 회의 참여

사업명	개최시기	참여기관	사업내용
강북구 돌봄네트워크 구성	21.01~12 매월 네트워크 회의개최	(사협)강북나눔돌봄센터 (사협)행복한돌봄 (사협)해든마음돌봄 동북종사자지원센터 (사)주거복지센터 강북지역자활센터 강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지역돌봄의제 발굴 * 돌봄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른 학습 * 지역돌봄커뮤니티케어 및 서울시 SOS센터 설치에 따른 대응 * 돌봄기업간 협업화사업 추진 * 신규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업종별 연대회의 참여

회의 및 사업명	활동내용	일정	참여인원	횟수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분과회의	사업별 정보공유	매월	2	12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간담회	돌봄정책이슈와 전망	분기별	1	2
요양보호사 산재예방 매뉴얼 개발	산재예방 콘텐츠 개발	21.03~04	2	4
장기요양 좋은돌봄 교재개발	좋은돌봄 교재 발간	21.05~12	1	10
(가칭) 강북구통합돌봄네트워크	지역통합돌봄기반구축	매월 21.10~현재	1	3

2021년 사업 전반적 평가

- 코로나19의 상황악화로 직원과 이용자의 확진판정이 지속되면서 부문별회의, 직원 소모임활동 및 확대, 직원워례회의와 교육, 이용자 상담 및 간담회, 지역과 업종 네트워크등 대부분의 대면 사업과 활동이 원활한 진행을 하지 못하였음. 특히 보수체계와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이 지연되어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없어 차기 사업계획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함

- 이용자의 소통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전직원 공감노트가 제작 배포되었으나 월례회의의 미개최 되면서 작성 및 인수인계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함.

-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야유회와 팥죽나눔행사 개최가 불투명하였으나 이사회를 통해 야유회는 개인별 힐링프로그램으로 진행 되었고 팥죽나눔행사는 팥떡나눔행사로 전환되어 진행하였음. 코로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직원과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했던 임원진의 노고를

- 주야간데이케어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시설사업은 2년을 거치면서 시설 정원을 육박하는 이용자를 확대하며 운영의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으며 3년차에 접어드는 2022년에는 영업이익을 법인전입금의 상환을 기대해 볼수 있음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사업감사 의견서

우리조합 정관 제50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2021년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감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제언을 덧붙입니다.

□ **감사일시 :** 2022년 3월 26일(토)

□ **감사방법 :** 조합제공 자료 검토 및 관계자 면담

- 2021년 사업결과보고서
-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면담자 : 상무이사 송영숙

□ **사업감사 결과 및 제언**

1. 감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매출, 고용, 이용자(서비스시간) 등이 모두 증가, 성장하였고, 부채는 감소하였습니다. 조합원(직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평균근속년수와 복리후생도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재가서비스 중심의 사업구조를 혁신하고자 추진했던 데이케어센터와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비로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은 조합원 여러분과 임원, 사무국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반면, 조합의 조직력이 약화된 한 해였습니다. 월례회의, 제위원회, 동아리, 문화행사 등 대부분의 조직활동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조합의 유대감, 소속감, 자긍심, 규범성 등이 후퇴하였으리라 미루어 짐작됩니다. 이의 원인이 경영, 전략 등 조직 내부에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 진단한 바와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 등, 시의적절한 대안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지 못한 점은 반성해야할 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조합과 같은 공익조직에서 '조직력'은 경영과 서비스품질의 상태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2021년 다행히 모두의 노력으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였지만, 서비스 품질의 측면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이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와 서비스가 목격되어 조합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된 몇몇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우리조합 내부에 부정결재와 같은 문란행위가 없다고 자신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직과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 같은 누수와 그에 따르는 파장도 커짐으로 대비도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조직이 노력했거나 잘한 일들을 결과로서 공유하고 알리는 것처럼, 조직이 빚은 실수나 불미스런 일들도 측정하고 성찰해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이용자의 민원발생, 조치 등의 관련현황과 활동을 확인, 점검할 수 없었습니다. 2022년에 이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강조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앞으로를 위한 제언

(제언요약) 2022년부터 '신규채용자'에게는 일반기관과 동일한 급여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년, 조합 역사상 최초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기 조합의 총매출(총비용)에서 조합원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97.6%입니다. 시장기반 제조업 기업들의 총매출 중 인건비 비중은 15%미만이며, 돌봄과 유사한 서비스업종의 경우 40%수준입니다. 각각 이를 초과하게 될 때 시장에서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2014년 조합 설립 당시 인건비 수준은 86%였으며, 88%를 조합경영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보았습니다. 97.6%란 현재의 수준은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원인'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합이 목적한 바와 같이 스스로 조합원의 급여수준을 높인 결과이며, 한편 비현실(비정상적)인 서비스 수가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 정부가 최저임금에 비례해 수가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 재정공백을 메꿔준 재원(영업외수익)은 사회적기업 정책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그 규모가 반 이하로 줄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서비스 수가의 급격한 인상이 없는 한, 앞으로 급여의 동결과 인하 또는 별도의 조합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재정공백을 메꾸는 방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조합의 정체성에 반할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기에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여 사업 감사로서 조합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 조합원들에게는 종전과 같이 총회를 통해 급여를 결정 적용해 나감으로써 권익과 처우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 하지만, 신규입사자들에게 이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조합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며, 앞으로는 '역차별'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따라서 신규입사자에게는 일반기관 종사자의 급여수준에 맞춰 최초 급여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합원 가입요건을 정비하여 그에 맞게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 급여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과의례가 조합의 조직과 사업, 자긍심을 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 교육, 근무기간 및 월근무시간, 서비스 역량 등등

• 기존 비조합원들도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급여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맺는 신규계약부터는 신규입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회를 마치고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3월 28일

사업감사 이 경 주 (인)

「의안 2호」
2021년 결산(안) 및 회계감사보고 승인

■ 주문사항 : 2021년도 결산(안) 승인과 미처분잉여금의 처분, 탈퇴조합원 출자금반환 및 감사보고를 의결하여 주십시오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2021년 결산보고(안)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금 액		제7(전)기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578,495,846		615,170,123
(1) 당 좌 자 산		578,495,846		615,170,123
보 통 예 금		467,461,596		332,234,193
미 수 금		107,481,900		282,935,930
선 납 세 금		3,552,350		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2,263,349,962		2,331,451,693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2,257,909,962		2,326,011,693
토 지		990,240,169		990,240,169
건 물	1,222,448,520		1,222,448,5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6,215,961	1,156,232,559	35,654,748	1,186,793,772
시 설 장 치	46,098,000		46,098,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939,131	26,158,869	10,719,531	35,378,469
차 량 운 반 구	54,725,300		54,725,3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1,830,130	32,895,170	10,885,070	43,840,230
비 품	86,879,290		86,879,29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4,496,095	52,383,195	17,120,237	69,759,053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440,000		5,440,000
기 타 보 증 금		5,440,000		5,440,000
자 산 총 계		2,841,845,808		2,946,621,816
부 채				
Ⅰ. 유 동 부 채		480,490,241		483,194,460
미 지 급 금		33,580,359		55,050,929
예 수 금		83,164,792		58,567,981
가 수 금		11,852,860		11,852,860
미 지 급 비 용		351,892,230		357,722,690
Ⅱ. 비 유 동 부 채		1,646,974,200		1,721,974,200
장 기 차 입 금		1,646,974,200		1,721,974,200
부 채 총 계		2,127,464,441		2,205,168,660
자 본				
Ⅰ. 자 본 금		294,422,730		284,458,770
출 자 금		294,422,730		284,458,77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419,958,637		456,994,386
법 정 적 립 금		138,085,311		99,799,612

재 무 상 태 표

제 8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7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미처분이익잉여금 (당 기 순 손 실) 당기 : 37,035,749 원 전기 : -127,618,998 원		281,873,326		357,194,774
자 본 총 계		714,381,367		741,453,15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841,845,808		2,946,621,816

손 익 계 산 서

제 8(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8(당)기		제7(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5,957,230,533**		**5,628,533,618**
돌봄서비스수입	5,929,190,533		5,603,513,618	
장기근속장려금	28,040,000		25,020,000	
Ⅱ. 매 출 원 가		**0**		**0**
Ⅲ. 매 출 총 이 익		**5,957,230,533**		**5,628,533,618**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6,053,641,375**		**5,688,913,246**
직원급여	4,955,512,180		4,697,091,267	
잡급	3,081,280		11,859,840	
퇴직급여	387,294,360		395,107,570	
복리후생비	441,046,669		444,612,732	
(사회보험지원금)	27,183,060		136,335,050	
여비교통비	1,977,900		1,963,748	
통신비	9,278,880		10,300,622	
수도광열비	6,193,000		4,922,050	
전력비	8,252,110		6,733,120	
세금과공과금	15,267,280		14,126,620	
감가상각비	68,101,731		65,767,764	
지급임차료	3,933,612		1,583,400	
수선비	0		2,081,950	
보험료	11,275,870		12,289,510	
차량유지비	7,451,307		3,958,095	
교육훈련비	5,326,926		29,719,618	
도서인쇄비	851,400		2,593,200	
회의비	5,227,170		2,313,770	
사무용품비	1,745,820		1,269,910	
소모품비	13,538,119		16,302,307	
지급수수료	30,190,769		23,826,402	
광고선전비	704,000		11,300,250	
시설장비유지비	3,450,000		0	
네트워크사업비	1,787,700		4,983,500	
조직사업비	19,993,220		4,519,360	
이용자관리비	24,637,177		16,426,559	
잡지출	377,481		6,442,451	
지역공헌사업	0		2,200,000	
생계비	33,032,565		17,214,571	

손 익 계 산 서

제 8(당)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7(전)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목	제8(당)기		제7(전)기	
	금액		금액	
프로그램사업비	19,453,999		9,170,630	
의료비	490,690		0	
업무추진비	1,351,220		4,567,480	
V. 영업손실		**96,410,842**		**60,379,628**
VI. 영업외수익		**105,197,093**		**231,344,838**
이자수익	332,880		219,774	
후원금	3,600,000		3,300,000	
정부지원	92,726,945		200,780,100	
잡이익	8,537,268		27,044,964	
VII. 영업외비용		**39,506,500**		**34,420,342**
이자비용	30,070,080		33,200,413	
기부금	5,725,000		120,000	
반환금	3,056,920		1,099,929	
잡손실	654,500		0	
VIII. 법인세차감전손실		**30,720,249**		**-136,544,868**
IX. 법인세등		**6,315,500**		**8,925,870**
법인세등	6,315,500		8,925,870	
X. 당기순손실		**37,035,749**		**-127,618,99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8(당)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 7(전)기	2020년01월01일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처분예정일	년 월 일	처분확정일	년 월 일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과 목	제 8(당)기		제 7(전)기	
	금 액		금 액	
Ⅰ.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281,873,326**		**357,194,774**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8,909,075		229,575,776	
2. 회 계 변 경 의 누 적 효 과	0		0	
3.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0		0	
4.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0		0	
5. 중 간 배 당 금	0		0	
6. 당 기 순 손 실	37,035,749		-127,618,998	
Ⅱ. 임 의 적 립 금 등 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 계		**281,873,326**		**357,194,774**
Ⅲ. 이 익 잉 여 금 처 분 액		**0**		**38,285,699**
1. 이 익 준 비 금	0		0	
2. 기 업 합 리 화 적 립 금	0		0	
3. 배 당 금	0		0	
가. 현 금 배 당	0		0	
나. 주 식 배 당	0		0	
4. 사 업 확 장 적 립 금	0		0	
5. 감 채 적 립 금	0		0	
6. 배 당 평 균 적 립 금	0		0	
7. 재 무 구 조 개 선 적립금	0		38,285,699	
Ⅳ. 차 기 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81,873,326**		**318,909,075**

※ 본 재무제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통예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8001	국민은행(장기요양)	기말잔액	12,098,615	
98002	국민(발달방과후서비스)	기말잔액	2,204,183	
98003	국민은행(장애인바우처)	기말잔액	235,872,980	
98004	국민은행(가사간병)	기말잔액	6,186,892	
98005	국민은행(예수금)	기말잔액	8,089,834	
98006	국민은행(출자금)	기말잔액	140,480,629	
98007	신협	기말잔액	12,899	
98009	KB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기말잔액	5,341	
98010	지정기부금	기말잔액	1,574,154	
98011	지역자산화 일자리창출	기말잔액	889	
98013	법정적립금(006619)	기말잔액	36,733,054	
98014	국민(주간데이케어)158355	기말잔액	1,877,812	
98015	국민(발달주간활동서비스)	기말잔액	3,549,603	
98016	국민(SOS센터일시재가서비스)	기말잔액	18,774,711	
합 계			**467,461,596**	

미수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기말잔액	97,813,860	
00104	가사간병사업	기말잔액	3,137,600	
00191	발달주간활동서비스	기말잔액	1,945,880	
98002	국민(발달방과후서비스)	기말잔액	350,500	
98016	국민(SOS센터일시재가서비스)	기말잔액	4,234,060	
합 계			**107,481,900**	

선납세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98001	국민은행(장기요양)	기말잔액	6,810	
98003	국민은행(장애인바우처)	기말잔액	3,531,460	
98005	국민은행(예수금)	기말잔액	5,670	
98006	국민은행(출자금)	기말잔액	8,410	

선납세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합 계			3,552,350	

토지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1	토지		990,240,169	
합 계			990,240,169	

건물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2	건물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1,222,448,520	
203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66,215,961	
합 계			1,156,232,559	

시설장치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6	시설장치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46,098,000	
207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19,939,131	
합 계			26,158,869	

차량운반구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08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54,725,300	
209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21,830,130	
합 계			32,895,170	

미지급비용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02	장애인바우처사업	기말잔액	331,111,260	
00104	가사간병사업	기말잔액	6,946,800	
00191	발달주간활동서비스	기말잔액	11,363,580	
98016	국민(SOS센터일시재가서비스)	기말잔액	2,470,590	
합 계			**351,892,230**	

장기차입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3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말잔액	1,521,974,200	
98009	KB보증서담보대출입금전용통장	기말잔액	125,000,000	
합 계			**1,646,974,200**	

출자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337	출자금	기말잔액	294,422,730	
합 계			**294,422,730**	

법정적립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353	법정적립금	기말잔액	138,085,311	
합 계			**138,085,311**	

비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12	비품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86,879,290	
213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명세서 참조	-34,496,095	
합 계			**52,383,195**	

미지급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85	현대캐피탈(모닝)	기말잔액	3,824,314	
00188	워킹레일할부금	기말잔액	11,414,291	
00189	현대캐피탈(스타렉스)	기말잔액	13,531,897	
00190	현대캐피탈(레이)	기말잔액	4,809,857	
합 계			**33,580,359**	

예수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54	예수금	기말잔액	83,164,792	
합 계			**83,164,792**	

가수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계정과목코드	계정과목명	적요	금액	비고
257	가수금	기말잔액	11,852,860	
합 계			**11,852,860**	

기타보증금 명세서

제 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단위 : 원)

코드	거래처명	적요	금액	비고
00145	세콤(N5613695)	기말잔액	140,000	
00183	(주)모든	기말잔액	400,000	
00188	위킹레일할부금	기말잔액	4,900,000	
합 계			**5,440,000**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회사명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미상각분 감가상각계산] (단위: 원)

자산명	취득일	업종코드/명	기초가액	당기증감	기말잔액	전기말상각누계액	상각대상금액	년수	상각률	월수	당기상각비	특별상각비	당기말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수유동472-115 신축사옥	2019-11-18	48	1,222,448,520		1,222,448,520	35,654,748	1,222,448,520	40	0.025	12	30,561,213		66,215,961	1,156,232,559
[소계] 건물			1,222,448,520		1,222,448,520	35,654,748	1,222,448,520				30,561,213		66,215,961	1,156,232,559
에어컨공사	2019-11-18	48	31,350,000		31,350,000	7,315,000	31,350,000	5	0.2	12	6,270,000		13,585,000	17,765,000
주방설비공사	2019-11-18	48	7,447,000		7,447,000	1,737,633	7,447,000	5	0.2	12	1,489,400		3,227,033	4,219,967
급수시설공사	2019-11-18	48	3,101,000		3,101,000	723,566	3,101,000	5	0.2	12	620,200		1,343,766	1,757,234
랜공사	2019-11-18	48	2,000,000		2,000,000	466,666	2,000,000	5	0.2	12	400,000		866,666	1,133,334
닥트설치	2019-11-18	48	1,100,000		1,100,000	256,666	1,100,000	5	0.2	12	220,000		476,666	623,334
2,3층비상개폐장치설치	2020-01-16	48	1,100,000		1,100,000	220,000	1,100,000	5	0.2	12	220,000		440,000	660,000
[소계] 시설장치			46,098,000		46,098,000	10,719,531	46,098,000				9,219,600		19,939,131	26,158,869
모닝	2019-12-23	48	12,135,300		12,135,300	2,629,315	12,135,300	5	0.2	12	2,427,060		5,056,375	7,078,925
레이	2019-12-31	48	14,720,000		14,720,000	3,146,255	14,720,000	5	0.2	12	2,944,000		6,090,255	8,629,745
스타렉스	2020-02-13	48	27,870,000		27,870,000	5,109,500	27,870,000	5	0.2	12	5,574,000		10,683,500	17,186,500
[소계] 차량운반구			54,725,300		54,725,300	10,885,070	54,725,300				10,945,060		21,830,130	32,895,170
세탁기&건조기	2019-11-18	48	2,260,000		2,260,000	527,333	2,260,000	5	0.2	12	452,000		979,333	1,280,667
음향기기	2019-11-18	48	6,600,000		6,600,000	1,540,000	6,600,000	5	0.2	12	1,320,000		2,860,000	3,740,000
팩스 복합기	2019-11-18	48	1,139,200		1,139,200	265,813	1,139,200	5	0.2	12	227,840		493,653	645,547
블라인드	2019-11-18	48	2,310,000		2,310,000	539,000	2,310,000	5	0.2	12	462,000		1,001,000	1,309,000
사무용가구	2019-11-29	48	32,963,700		32,963,700	7,691,530	32,963,700	5	0.2	12	6,592,740		14,284,270	18,679,430
김치냉장고(2층)	2019-12-16	48	1,085,050		1,085,050	235,094	1,085,050	5	0.2	12	217,010		452,104	632,946
간판외	2019-12-31	48	5,200,000		5,200,000	1,126,666	5,200,000	5	0.2	12	1,040,000		2,166,666	3,033,334
안마의자4대	2020-01-15	48	2,162,280		2,162,280	432,456	2,162,280	5	0.2	12	432,456		864,912	1,297,368
1,2층TV구입	2020-01-15	48	903,060		903,060	180,612	903,060	5	0.2	12	180,612		361,224	541,836
소독기구입	2020-01-16	48	1,078,000		1,078,000	215,600	1,078,000	5	0.2	12	215,600		431,200	646,800
사무용 컴퓨터 구입	2020-02-17	48	1,029,000		1,029,000	188,650	1,029,000	5	0.2	12	205,800		394,450	634,550
건물 옥외광고판 구입	2020-12-15	48	4,593,000		4,593,000	76,550	4,593,000	5	0.2	12	918,600		995,150	3,597,850
차량 외부 광고판	2020-12-15	48	1,056,000		1,056,000	17,600	1,056,000	5	0.2	12	211,200		228,800	827,200
워킹레일	2020-03-31	48	24,500,000		24,500,000	4,083,333	24,500,000	5	0.2	12	4,900,000		8,983,333	15,516,667
[소계] 비품			86,879,290		86,879,290	17,120,237	86,879,290				17,375,858		34,496,095	52,383,195
합계			1,410,151,110		1,410,151,110	74,379,586	1,410,151,110				68,101,731		142,481,317	1,267,669,793

주문1 > 2021년 당기순손실 발생에 따른 손실금에 대한 처분 승인

정관제63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조합의 정관에 따라 21년 12월까지 결산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함으로 인해 손실금 일금 37,035,749원에 대해 법정적립금에서 충당한다.

[참고 : 법정적립금 내역]

8기 21년도 : 3월24일 21년도 재무구조적립금에서 차감 37,035,749

7기 20년도 : 3월27일 20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8,285,699원

6기 19년도 : 3월27일 19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066,558원

5기 18년도 : 3월12일 18년도 재무구조적립금 53,143,976원

4기 17년도 : 4월06일 17년도 재무구조적립금 30,123,544원

3기 16년도 : 4월18일 16년도 재무구조적립금 8,972,702원

2기 15년도 : 3월29일 16년도 재무구조적립금 4,492,832원

2~8기 법정적립금누계액 총 101,049,562원 / 국민은행 487137-01-006619

주문2 > 2021년도 탈퇴조합원 출자금 반환 승인

[반환대상 조합원]

조합원명	조합원유형	탈퇴일	반환 출자금액
이정희	자원봉사조합원	2021-12-31	1,319,230원
송영란	직원조합원	2021-12-31	1,694,000원
김순주	직원조합원	2021-06-26	3,629,500원
최영희	직원조합원	2021-03-01	2,155,000원
김운순	직원조합원	2021-10-19	775,250원
주옥화	직원조합원	2021-12-31	3,034,800

윤정분	직원조합원	2021-09-01	490,000원
이세영	직원조합원	2021-03-09	626000원
유혜경	직원조합원	2021-07-01	1,612,520원
고석희	직원조합원	2021-04-01	411,000원
조명숙	후원조합원	2020-03-31	56,000원
박종임	후원조합원	2020-03-31	278,000원
황은영	직원조합원	2021-03-31	2,153,000원
장현숙	후원조합원	2021-03-31	63,000원
김순덕	후원조합원	2021-03-31	30,000원
최재금	자원봉사조합원	2020-11-31	1,579,000원
총인원수	**16명**	**총금액**	**19,906,300원**

2021년도 영업 수입지출 보고서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1. 21년도 수입 결산보고 (1월~12월)

<수입부>

<21.12.31일 현재 단위:원>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예수금	합계	구성비	21년 예산안	세부내역
서비스수입	1,269,413,810	3,611,423,176	77,137,811	174,015,700	99,862,420	15,136,710	84,801,830			5,331,791,457	85.0%	4,604,150,000	국비/장기요양 수입
본인부담금	92,768,460	72,542,053	563,789	15,430,760						181,305,062	2.9%	235,900,000	본인부담금
추가이용료				4,150,000			2,862,280			7,012,280	0.1%		유료서비스
시구비수입		355,771,074			42,396,630					398,167,704	6.3%	396,100,000	장애인 시도추가
인력가산	90,685,340			15,701,920						106,387,260	1.7%	134,000,000	사회복지사 가산
중증가산		33,169,000								33,169,000	0.5%	15,000,000	중증장애인 가산
장기근속	27,080,000			960,000						28,040,000	0.4%	24,000,000	장기요양 근속수당
식재료수입				46,796,280	144,000					46,940,280	0.7%	50,500,000	식대수입
보조금		800,000		8,350,000				27,000,000	83,760,005	119,910,005	1.9%	113,340,000	국가보조
예금이자수입	37,588	140,571	4,187	6,764	7,621	2,594		6,487	31,256	237,068	0.0%	80,000	예금이자
잡수입	34,527	699,900	30,000					100,000	2,317,441	3,181,868	0.1%	4,800,000	잡수입
총수입합계	**1,480,019,725**	**4,074,545,774**	**77,735,787**	**265,411,424**	**142,410,671**	**15,139,304**	**87,664,110**	**27,106,487**	**86,108,702**	**6,256,141,984**	99.7%	**5,577,870,000**	113%
과년도수입	4,761,400			594,000						5,355,400	0.1%		20년도사업 간대여분
법인전입 차입금	-2,000,000			16,000,000	-2,000,000					12,000,000	0.2%		법정및 출자일시전입
총수입금액	**1,482,781,125**	**4,074,545,774**	**77,735,787**	**282,005,424**	**140,410,671**	**15,139,304**	**87,664,110**	**27,106,487**	**86,108,702**	**6,273,497,384**	100.0%		

< 매출원가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합계	구성비	21년예산	세부내역
현장직원	942,571,463	2,252,350,918	44,557,073				51,934,411		3,291,413,865	53.0%	2,729,011,200	서비스직원 급여
전담인력		82,485,820		167,704,980	85,203,300	2,200,000	15,197,401	21,280,000	374,071,501	6.0%	453,456,000	
상여	9,850,000	6,530,101		12,200,000	7,349,130	7,000,000	1,200,000		44,129,231	0.7%	36,400,000	실무자명절상여
주차,연차,휴일 등 각종수당	307,555,707	899,790,791	16,853,027	1,015,990	7,801,050	221,050	23,797,768		1,257,035,383	20.1%	1,101,469,760	주휴수당
사회보험 사업자부담	86,619,410	281,384,929	3,289,010	16,865,710	9,767,650	242,790	5,240,210	1,246,500	404,656,209	6.5%	402,234,000	사회보험사업자
퇴직적립	87,798,410	265,807,250	5,113,810	14,067,750	8,323,900	201,750	7,021,190		388,334,060	5.8%	348,933,000	총급여의 1/12
일용잡급	2,610,670						470,610		3,081,280	0.0%	9,012,240	무료돌봄공인건비
매출총이익	**1,437,005,660**	**3,788,349,809**	**69,812,920**	**211,854,430**	**118,445,030**	**9,865,590**	**104,861,590**	**22,526,500**	**5,762,721,529**	92.1%	**5,080,516,200**	114%

<판매관리비 : 사무운영비 및 사업비>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예수금	합계	구성비	21년예산	세부내역
업무추진비									1,351,220	1,351,220	0.0%	900,000	이사장업무추진비
회의비	2,336,730	2,826,140	8,100	3,600	44,700		7,900			5,227,170	0.1%	9,080,000	이사회및부문위원회, 정기총회
네트워크사업비	609,800	600,000					208,100	369,800		1,787,700	0.0%	2,400,000	한국돌봄조합비,
여비교통비	1,623,550	260,000		18,200		9,800		66,350		1,977,900	0.0%	4,200,000	현장방문교통카드 충전
지급수수료	8,452,616	15,980,785	952,000	1,224,568	385,000	708,500	961,000		1,077,000	29,741,469	0.5%	27,700,000	세무기장,등기,승강기, 세콤,퇴직연금수수료
사무용품비	287,340	402,850		9,900	6,300		10,000	1,029,430		1,745,820	0.0%	6,600,000	복사용지등 사무용품

계정명	장기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예수금	합계	구성비	21예산	세부내역
도서인쇄비	66,000	785,400								851,400	0.0%	2,010,000	근무일지복사
차량주차비	4,550	3,900	13,720	17,650	151,600	2,000	8,050			201,470	0.0%	300,000	이용자방문 차량주유
소모품비	1,919,828	1,980,798	801,270	3,642,765	515,152	88,720			4,558,086	13,506,619	0.2%	6,360,000	휴지및커피등 소모품비
집기렌탈	1,621,959	1,061,653	238,800	1,221,700	139,300	99,500				4,382,912	0.1%	지급수수료	재활기구, 세라젬 정수기,프린터기 렌탈
전기요금	2,667,390	3,189,570	1,427,470	511,830	1,336,880	752,110			-1,633,140	8,252,110	0.1%	6,300,000	전기요금
보험료(배상상해)	2,408,100	3,931,100	50,000		40,000		20,000		1,274,010	7,723,210	0.1%	5,945,000	배상및상해보험료
보험료(자동차등)	1,912,280	557,380		783,000					300,000	3,552,660	0.1%	3,200,000	자동차등보험료
세금과공과	4,639,100	15,659,150		59,050					4,731,370	25,088,670	0.4%	21,500,000	법인세및주민세, 재산세,지방세종업원
단말기통신비		4,728,790	382,800		29,390	14,860				5,155,840	0.1%	6,532,800	바우처단말기통신비
사무용통신비	2,985,710	194,080	4,580	900,460	5,430		32,780			4,123,040	0.1%	4,320,000	사무용전화, 우편발송료
도시가스	1,971,020	857,910		531,900	853,700	198,510				4,413,040	0.1%	3,900,000	도시가스
수도요금	536,960	601,340				641,660				1,779,960	0.0%	1,800,000	수도요금
차량유류및정비	1,485,153	642,760	80,617	4,723,655			317,652			7,249,837	0.1%	6,300,000	차량유류및정비
자동차할부	3,387,067	4,310,416		5,771,027						13,468,510	0.2%	16,332,000	스타렉스,레이,모닝 할부
복리후생비(직접)	7,295,860	19,389,090	315,000	25,000	45,000		630,000			27,699,950	0.7%	51,045,000	근속포상,명절상품권, 안전관리,경조비, 독감접종, 야유회
복리후생비(간접)	2,252,850	2,070,100	437,100	1,968,350	2,000,850	42,000	521,220			9,292,470	0.1%	9,120,000	직원야근식대, 점식식대지원
조직사업비	1,299,020	2,944,400							15,749,800	19,993,220	0.1%	13,240,000	이취임식,동아리지원등
홍보비		704,000								704,000	0.0%	1,050,000	이용자달력구입등
건물/비품 수선비	682,000	88,000							2,680,000	3,450,000	0.1%	5,200,000	건물수리

계정명	장기요양	바우처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예수금	합계	구성비	21예산안	세부내역
주부식재료비				32,909,865					122,700	33,032,565	0.5%	36,000,000	조리실 식재료
이용자관리비	7,912,553	7,838,145	765,065	2,870,641	4,109,570	72,815	719,770		33,280	24,321,839	0.4%	31,820,000	이용자 명절선물, 방문다과구입 기저귀등 구입,
교육훈련비	1,831,820	1,338,120		333,000					93,680	3,596,620	0.1%	23,300,000	직무역량 수당 및 월례회의
의료비	8,000			349,940	130,750	2,000				490,690	0.0%		이용자응급약품구입등
이용자간식구입	13,500			301,838						315,338	0.0%	2,500,000	이용자간식
프로그램비				7,327,465	12,167,410	1,680,670			8,760	21,184,305	0.3%	22,800,000	프로그램진행
자산취득										0	0.0%		컴퓨터및집기등 구입
시설장비할부				8,002,060						8,002,060	0.1%	8,916,000	워킹레일할부
대출원금상환									75,000,000	75,000,000	1.2%	74,300,000	국민은행대출상환
이자지불금	226,661	584,892		1,747,787					27,510,740	30,070,080	0.5%	22,800,000	대출,할부이자
서비스비용반납								3,056,920		3,056,920	0.0%		서비스비용반납
잡지출		106,700	18,000	53,800	12,200		3,600	63,181	1,714,000	1,971,481	0.0%		
사업비합계	**60,437,417**	**93,637,469**	**5,494,522**	**75,309,051**	**21,973,232**	**4,313,145**	**3,440,072**	**4,585,681**	**134,571,506**	**403,762,095**	6.4%	**437,770,842**	93%

<영업이익 결산 >

사업팀	장기요양	장애인	가사간병	주야간보호	주간활동	방과후	일시재가	통합돌봄	예수금	총계
매출액	1,482,782,125	4,074,545,774	77,735,787	282,005,424	140,266,671	15,139,304	87,664,110	27,106,487	86,108,702	**6,273,354,384**
인건비	1,437,005,660	3,788,349,809	69,812,920	211,854,430	118,445,030	9,865,590	104,861,590	22,526,500		**5,762,721,529**
매출총이익	**45,776,465**	**286,195,965**	**7,922,867**	**70,150,994**	**21,965,641**	**5,273,714**	**-17,197,480**	**4,579,987**	**86,108,702**	**510,776,855**
판매관리비	60,437,417	93,637,469	5,494,522	75,309,051	21,973,232	4,313,145	3,440,072	4,585,681	134,571,506	**403,762,095**
영업이익	**-14,660,952**	**192,558,496**	**2,428,345**	**-5,158,057**	**-7,591**	**960,569**	**-20,637,552**	**-5,694**	**-48,462,804**	**107,014,760**
전년도이월금	26,760,567	43,314,484	3,758,547	7,195,849	3,557,194	1,243,614	39,463,263	5,694	32,014,327 24,538,311	**157,313,539**
통장잔액	**12,098,615**	**235,872,980**	**6,186,892**	**1,877,812**	**3,549,603**	**2,204,183**	**18,825,711**	**0**	**8,089,834**	**288,705,630**

< 국가보조금 수입지출 현황 >

구분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지원	맞춤형사업지원	독감예방접종	중증장애인교육	방역인력지원금	통합돌봄	총계
출자금	41,941,670	27,183,060	14,635,275	2,920,000	1,500,000	8,350,000	27,000,000	**123,530,005**

< 기부금 수입지출 현황 >

구분	20년도 잔액	과년도수입	법인후원금	개인후원금	수입합계	월요밥상후원	팥죽나눔행사	지역공헌	지출합계	잔액
출자금	3,696,078	283,000	3,000,000	600,000	**7,579,078**	1,200,000	2,289,000	2,519,000	**6,008,000**	**1.571.078**

<출자적립금 현황>

구분	20년도 이월잔액	21년기초출자	21년이용출자	주야간및발달대여	19년 건축비용	토지잔금	21년 탈퇴조합원 출자반환	출자금총계
출자금	143,470,393	0	21,829,000	27,000,000	35,000,000	92,000,000	-11,865,040	307,434,353

<부채현황>

구분	총대출액	21년 대출이자총액	총원금상환총액	대출잔액
국토교통부(허그)	1,500,000,000	22,824,940	0	1,500,000,000
신용보증기금	300,000,000	4,685,800	187,500,000	112,500,000
영업이익	**1,800,000,000**	**27,510,740**	**187,500,000**	**1,612,500,000**

2021년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회계감사 의견서

회계감사가 감사일 현재 산재 치료중으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50차, 51차 정기이사회의 결산(안) 논의시 주요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조합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9년 54억, 20년 56억, 21년 59억 3년간 매출액이 2~3억가량 매년 증가했으나 이는 수가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며, 실제 서비스이용시간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년 30,172 20년 32,235 21년 33,070 시간으로 데이케어등 시설사업이 추가된데 따른 증가분을 제외하면 우리조합 사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재가사업이 3년간 정체기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2년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악재를 요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실제 경영진은 조합의 재가 이용자 증가는 18년부터 임계치에 다 달았다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왔다.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하는 낮은 수가정책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고용의 질과 확대는 요원할 것으로 판단했고 새로운 판로 확장에 기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시설사업의 경험을 축척해 국공립 위수탁을 공략하며 외적으로 규모와 공익성을 확장하고 내부적으로 조합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전략은 사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실험대 위에 우리는 함께 놓여있으며 이 도전의 타당성을 함께 확인해가야한다.

사업명	2021	2020	2019
장기요양	6,858	6,271	6,560
가사간병	444	445	1,437
장애인	21,288	22,698	22,175
발달주간	954	339	
발달방과후	84	81	
주야간보호	3,054	1,760	
일시재가	388	641	
총계	**33,070**	**32,235**	**30,172**

둘째.. 우리 조합은 그동안 조직의 공익성을 담보로 6년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 4억, 일자리안정자금 2억5천, 우수사회적기업 지원 4천5백만원등 7억에 가까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며 일부는 사업운영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토지와 건물 차량등 자산형성을 이루었다. 자산형성이 우리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 2022년은 국고 지원 없이 순수 매출에 근거해 급여와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재무 지표상으로 조합의 손해이고 위기로 보이겠지만 조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다. 조합의 문제를 놓고 우리 조합원은 대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분명 갈등하고 반목하겠지만 조합의 위기대응력은 또 한 발짝 성장할 것이다. 이 중요한 시점을 잘 맞이해야 하겠다.

「의안 3호」

이사장 및 회계감사 보궐선출

■ 주문사항 : 이사장과 회계감사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자 하오니 선출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4기 임원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자

1. 이사장입후보자

기호1번	기호1번
이사장	회계감사
송 영 숙	전 연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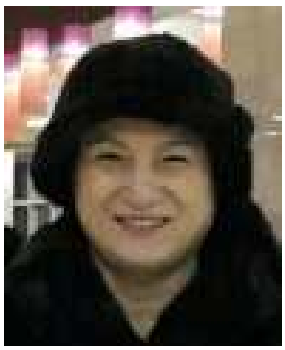

4기 임원보궐선거 입후보자
인적사항 및 경력

이사장 입후보자

기호	성명	입후보직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송영숙	이사장	71.07.04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전) 강북지역자활센터 돌봄사업팀장

회계감사 입후보자

기호	성명	입후보직	생년월일	조합원유형	주요약력
1	전연희	회계감사	58.03.05	직원조합원	(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요양보호사

「의안 4호」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

■ 주문사항 : 2022년도 사업계획(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2022년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사업계획(안)

1. 기본사항

- 조직명칭 :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 조직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 1항에 의거)
- 조직형태 : 비영리법인 (보건복지인가 제30호),
- 설립연월일 : 2014년 3월 25일
- 협동조합인가일 : 2014년 10월 15일
- 법인등기 : 2014년 11월 05일
- 사회적기업 인증 : 2016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제 2016-255호)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018년 09월 28일
- 서울시우수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2018년 12월 24일
- 지역복합돌봄센터 사옥건립 완공 : 2019년 11월 18일
- 협동조합유공표창 : 2020년 07월01일

2. 조합원현황

(2022.01.01.일 조합합원 명부기준)

구 분	조합원수	성별		직원 조합원	후원 조합원	자원봉사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이용자 조합원	취약계층비율	신규 조합원	탈퇴 조합원
		남	여								
단위/명	158	11	147	144	7	5	0	2	118	0	16
비율(%)		7	93	92	5	4		2	75	0	

3. 직원현황

(2022.01.01.현재단위:명)

구 분	전체 직원	성별		사업단내부 겸직직원수	휴직자수	타기관 겸직
		남	여			
단위/명	257	18	239	32	7	46(장애,한결)
비율(%)	100	7.0	93.0	12.5	2.7	17.8

4. 출자금현황

구분	20년도 이월잔액	21년기초 출자	21년이용 출자	주야간및 발달대여	19년 건축비용	토지잔금	21년 탈퇴조합원 출자반환	출자금총계
출자금	143,470,393	0	21,829,000	27,000,000	35,000,000	92,000,000	-11,865,040	307,434,353

5. 임원 및 실무직원 현황

구 분	임원 총수	이사장	상무 이사	내부 이사	외부 이사	감사	사회 복지사	간호조무사	운전원	조리원
단위/명	15	1	1	10	1	2	13	1	1	1

6. 주사업

- 돌봄서비스공급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조합원의 고용안정사업
- 직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사업
- 기타 돌봄사회서비스 사업

7. 주사업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 서비스
-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서비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 및 지자체 시설 위탁 및 공모사업
-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8.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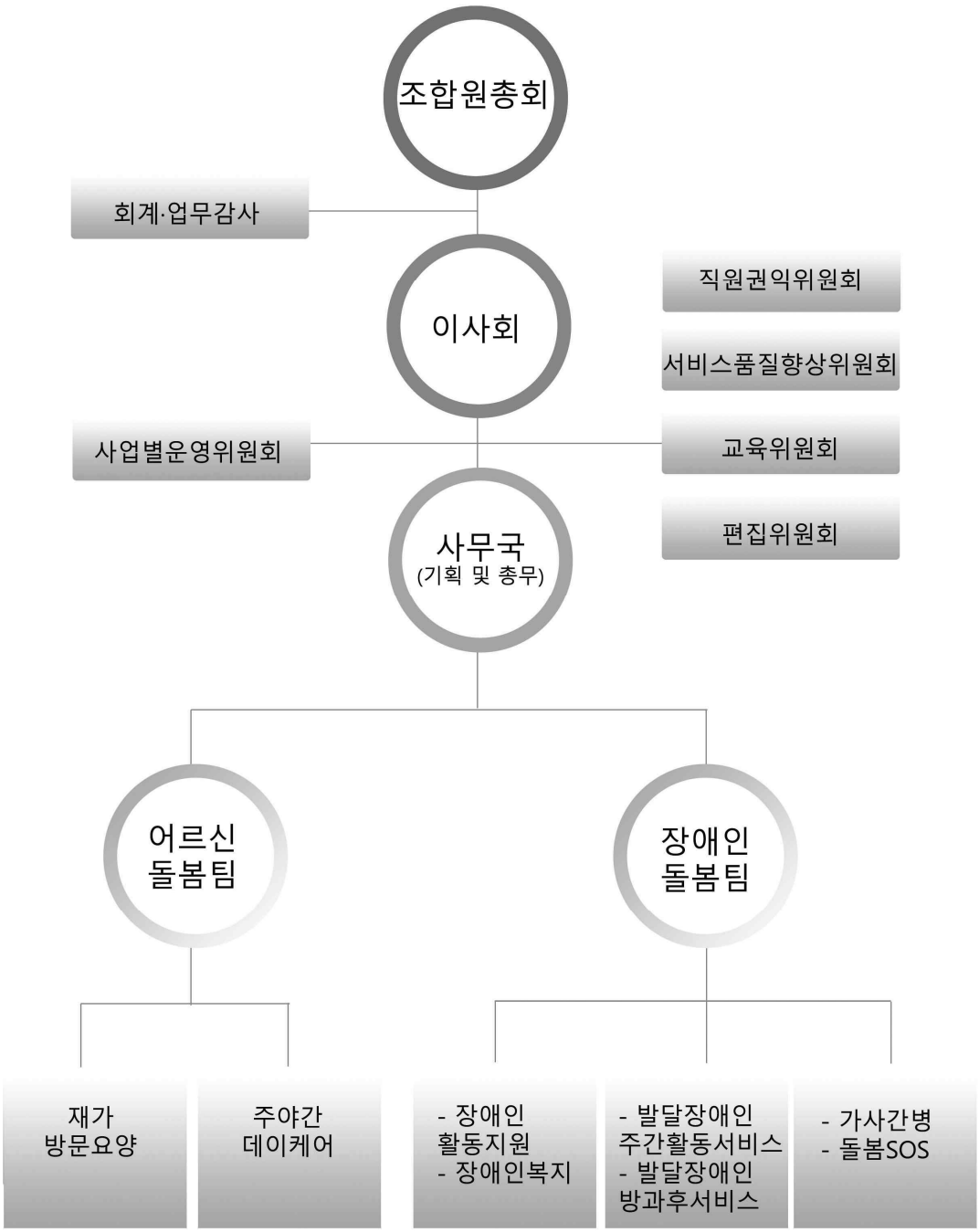
조합원총회
회계·업무감사
이사회
직원권익위원회
서비스품질향상위원회
사업별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사무국
(기획 및 총무)
어르신
돌봄팀
장애인
돌봄팀
재가
방문요양
주야간
데이케어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복지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방과후서비스
- 가사간병
- 돌봄SOS

Ⅰ. 2022년도 사업추진 방향

2021년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세로 대면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던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축소 또는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의 사업계획에 미진했던 사업을 재 추진하기로 함. 특히 직원의 보수체계수립과 조합의 역할별, 부문별 조합교육체계 수립을 위해 임원과 조합원 실무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공감노트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소통활성화 하고자 함. 또한 월례회의의 미개최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던 직원교육의 양질화를 꿰하며 안정화를 접어든 시설사업은 2022년은 법인전입금에 대한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가사업의 사무운영비 부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확대를 꿰하기로 함

Ⅰ. 조합의 주체역량 강화와 역할별 교육체계 설계
Ⅱ. 직원 보수체계수립
Ⅲ.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감노트 공유확대 및 직무교육의 질 강화
Ⅳ.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영역의 연대강화
Ⅴ. 신규 사업의 안착화

Ⅱ. 목적별 세부사업 방향

사 명
서로 존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터 공동체를 만든다

핵심가치

참여	소통	좋은관계	즐거운일터	인권

목 적	활 동
1.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한다.	1-1.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1-2. 직무교육 운영
	1-3.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1-4. 이용자 조합원의 소통 확대
	1-5.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2.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2-1. 직원 복지 개선
	2-2. 보수 체계 구축
	2-3.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고충 상담
	2-4. 직원 자치 모임 개설 및 확대
3.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하고 실시한다.	3-1.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3-2. 조합원 유형별·역할별 교육 개설 및 운영
4.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공헌 한다.	4-1.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4-2.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4-3.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4-4. 지역사회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5.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서비스 업종 조직과 소통과 연대한다.	5-1.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5-2.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5-3.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 핵심성과 지표

1. 목적 : 돌봄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신뢰할만한 서비스 제공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 현장의 사례별 대처 매뉴얼 개발 • 품질위원회의를 통해 초안을 개발하고 사례를 선정 • 초안을 가지고 조합원과 사례관리토론회 실시(1회) • 전체 조합원과 현장토론(1회)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개발하였는가?
직무교육 운영	• 돌봄서비스 관련 직무교육 (소통교육(대화의 기술) 등) 및 활동지원사 및 요양사 역량강화 교육 : 질환별 교육 및 전문지식 교육	돌봄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 이용자 돌봄서비스 인수인계 노트 활용 : 소통노트 사례발표로 활용 촉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인수인계 노트를 활용하였는가?
이용자와의 소통 확대 (간담회, 소식지, 안내문 발행 등)	• 이용자 간담회 실시(1년 1회) • 정기적인 정보제공(소식지, 안내문) – 소식지 : 편집위원회 – 이용자보호자 안내 및 문자 • 현장 서비스 방문 모니터링 및 (해당) 직원에게 공유	이용자조합원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소통을 개선하고 있는가?
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 1년1회 만족도설문조사 실시 • 권역별 방문설문조사 실시 • 사업계획에 반영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2. 목적 :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개선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직원 복지 제공	–건강관리 : 모든 직원 건강검진 실시 및 관리 (2차 검진 포함), 독감예방주사 등 –근무환경개선 : 현장체크리스트* 통한 사전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상담지원 : 정신건강, 감정노동 문제 발생시 지원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직원건강검진, 현장 환경개선을 통한 근무환경개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직원복지활동 : 조합원의 쉼과 회복위한 복지 증진 (야유회, 체육대회, 표창자 수(금액), 고용안정기금 지원 등) -정기적인 권익위회의 실시(장기근속자 및 기타사유시 유급휴가 등 논의)	소통하며 제공하는가?
보수 체계 구축*	• 보수체계 구축(근속수당, 월급제) -재무구조 검토 및 현장과 소통 필요 -체계구축에 5년 계획 -전직원 대상 참여, 현재 1회 실시(연 3~4회 목표) -이사회의에서 안건으로 계획수립 및 의결	협동조합 직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조합원 만족도 조사 및 직원 고충상담	• 현재 연1회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의견 제시 시 사업계획에 반영 • 직원 고충상담(어려움, 개선사항 등)을 통한 질적 조사	정기적으로 조합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는가?
직원 자치 모임 추가 개설 및 운영	• 소모임, 부문위원회 등 직원의 자치활동을 활성화	직원 자치 모임 지원을 통해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있는가?

3. 목적 : 조합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 조합원 교육체계 설계 -내년 하반기 진행 목표 -사무국 초안→교육위 검토→이사회→ 20년 상반기 교육체계 설계 완료 → 20년 하반기 실행	총체적인 조합원 교육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했는가?
조합원 유형별·역할별 교육 개설 및 운영*	• 협동조합 유형별, 역할별(이사, 사무국, 현장) 조합원 교육 • 소모임, 조합원, 이사 등 협동조합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개설* - 프로그램 운영으로 리더 발굴 → 설계 이후 세부 내용 확정	협동조합 구성원별로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운영하는가?

4. 목적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돌봄 사각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제공	• 지역공헌사업비 편성 및 인력 배치	지역사회 돌봄 사각계층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 취약계층 우선고용(여성, 기초수급자, 고령) - 지역 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였는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는가?
후원기금 확대 및 정기적인 지역공헌활동(행사)	• 후원조합원(후원기관, 후원자) 및 자원봉사조합원 확대, • 팥죽나눔행사(정기적 행사) 등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 후원조합원을 확보하여 후원금액을 증액하였는가? 자원봉사 조합원을 확보 하였는가? 후원기금을 통해 지역공헌활동(행사)을 실시하였는가?
지역사회 행사시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	• 강북행복상담소, 사회적경제박람회, 지역행사 등 참여	지역사회 행사를 통해 돌봄사회서비스 정보·상담 제공하고 있는가?

5. 목적 :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및 돌봄서비스 업종과 연대와 소통으로 협업한다.

활동	활동내용	측정방향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 교류	• 한국돌봄 정책연대 활동 참여	돌봄서비스 관련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참여하는가?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대	• 강북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 연대 활동 -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강북구 지역돌봄네트워크 연대(MOU 체결) - 지역사업 건강,의료,돌봄,복지 관련 현재 7개 조직과 MOU체결하여 구청 홍보활동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네트워트 관련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는가?
지역연계형 사업 다각화 추진*	• 지역돌봄네트워크 의제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지역 도시재생 사업 연계	지역사회와연계하여 다양한 공동활동을 추진하는가?

「의안 5호」

2022년 예산(안) 승인

■ 주문사항 : 2022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별첨자료 참조

기타안건

■ 주문사항 : 기타안건에 대해 심의하여 주십시오

「별첨자료」

1.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
2. 총회운영규칙
3. 정관
4.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5. 제7차 정기총회 조합원명부
6. 21년 5년 근속장려포상 조합원명단

「별첨1」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제6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명: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제6차 정기총회
2. 공고일: 2021년 03월19일 /
3. 개최일시: 2021년 03월 27일(토) 04월08일(토) 9시~17시
4. 개최장소: 센터 지하공간 '누구나'

5. 정기총회 의사록

가 성원보고
조합원 174명중 참석조합원 126명과 위임5명 총131명이 참석하였음을 송영숙상무이사가 보고하다

나 개회선언
이경주이사장이 재적조합원 174명중 131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이 되었으므로 총회가 성사되었음을 선포하다

다. 회의진행 설명
코로나-19 2단계 상황에서 참석조합원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방역 및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회일 사전에 SNS 및 조합 메신저를 통해 안건자료 전달하였고 조합원이 이를 검토하여 사전 질문 응답의 과정을 거쳤으며 총회 당일은 총회안건에 대해 개별 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임원선출은 무기명투표를 실시함을 설명하다

라. 총회의사록 서기 및 총회의사록 날인자 선출
의장이 전지원조합원을 서기로 추천하였고 서명날인으로 이금옥, 안정열, 김성림 조합원을 추천하였고 임세엽 조합원이 제청하여 전원 선출되다

마. 의안심의
1) 의안1호 2020년 사업결과보고 승인
126명이 투표하여 찬성119표, 반대4표, 기권3표로 가결되다

2) 의안2호 2020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126명이 투표하여 찬성112표, 반대6표, 기권8표로 가결되다

3) 의안3호 4기 임원선출

- 이사장(이사) 이금옥 찬성94표, 반대28표, 기권4표로 선출되다
- 이사 선출에 이성자 찬성 65표, 전복재 찬성 63표, 김연중 찬성 55표, 박숙자 찬성 54표, 김영화 찬성48표, 김애숙 찬성 44표, 정용숙 찬성44표, 남종식 찬성75표, 박미옥 찬성 73표, 신윤도 찬성 65표, 조태순 찬성 63표, 신강순 찬성 58표, 황창미 찬성 58표, 한근애 찬성 57표, 윤태권 찬성 47표, 송영숙 찬성117표, 정성자 찬성77표, 김태진 찬성84표로 과반수 이상 득표자 이성자, 전복재, 남종식, 박미옥, 신윤도, 조태순, 송영숙, 정성자, 김태진 9명의 후보가 이사로 선출되다.
- 회계감사 이막례 찬성76표 반대29표 기권21표로 선출되다
- 사업감사 이경주 찬성87표 반대22표 기권17표로 선출되다

- 이사선출 정수15명에 미달되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2차 선출투표를 실시하다
- 2차 선출투표에서 신강순, 윤태권, 한근애, 황창미 후보가 2차 투표에 입후보 포기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김연중, 김영화 정용숙 3명의 후보에 대한 2차 이사선출 투표를 실시하다
- 2차 선출투표는 투표자수 100명이 참석하여 김연중 찬성 72표 김영화 찬성 54표, 정용숙 찬성61표로 다득표순으로 김연중, 정용숙 후보 2명이 이사로 추가 선출되다.

- 선거관리위원장 김교숙이 최종 선출 임원을 최종 선포하고 협동조합 공식 밴드에 임원선출 결과를 게시하기로 하다

이사장(이사): 이금옥
이사(가나다순) : 김연중, 김태진, 남종식, 박미옥, 송영숙, 신윤도, 이성자, 전복재, 정성자, 정용숙, 조태순
회계감사 : 이막례
사업감사 : 이경주

4) 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참석조합원 126명이 투표하여 찬성114표, 반대3표, 기권9표로 가결되다

5) 정관변경에 관한 승인

참석조합원 126명이 투표하여 찬성112표, 반대7표, 기권7표로 가결되다

바. 의사록채택

의장이 안현여 서기에게 작성된 총회의사록 낭독을 요청하다. 의장이 총회의사록에 이의가 없는지 물은 후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의사록을 채택 선언하고 추후 심의안건 및 임원 선출에 대한 투표결과를 조합 공식밴드를 통해 공고하도록 요청하다. 의사록 날인자로 선출된 이금옥, 안정열, 김성림 조합원이 의사록에 서명을 하다.

사 폐회 선언
의장이 모든 심의 안건에 대한 투표 종료로 제6차 정기총회를 폐회 선언하다.
(20시40분)

이 사 장 이 경 [illegible]

서명날인자 이 금 옥 이금옥

서명날인자 안 정 열 안정열

서명날인자 김 성 림 김성림

「별첨2」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총회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8조에 따라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와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와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와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와 통지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의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결사항)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 (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과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와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 총회에서 선임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와 장소
4. 재적 조합원수와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과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5년 4월 28일 1차 정기총회

「별첨3」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돌봄사회서비스 공급과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바른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터 공동체 실현과 인간존중의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소관부처의 별도 법령 및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제 2 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 및 경영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이용할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등을 기부하거나 자금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출자금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 3 장 출 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하고,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3만원이상 이어야 한다.

② 조합의 출자금 납입총액은 10,000,000원이상으로 한다.

③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⑦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이때의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5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3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직무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조합원 외 임원의 추천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제32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1호~8호)을 제외한 총회의 위임사항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무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 업

제54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조합의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돌봄사회서비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2. 돌봄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사업
3. 기타돌봄사회서비스

② 주 사업에서 공급하는 돌봄사회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
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4.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지원서비스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서비스
6.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한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7. 사회서비스분야 국가 및 지자체 시설위탁 및 공모사업
8. 개인간병, 병원간병, 산후조리 및 신생아관리서비스, 기타 대인서비스

③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돌봄사회서비스 연구 및 개발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이 경우 주 사 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⑥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55조(소액대출) ①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4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④ 소액대출의 이자율은 2%으로 한다
⑤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3%으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등 소액대출 사업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능력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4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한다.

제56조(상호부조) ①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00,000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5,000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4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 처리한다.

제57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 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 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

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제 8 장 회 계

제5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③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회계운영 시 각 사업별 법령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60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1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독관청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62조(기부금의 사용과 공개)

① 조합은 기부금을 모집하되 그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나 친목도모가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해야하며 불특정한 다수를 그 수혜자로 한다.

② 기부금은 일반회계와 별도로 관리하며 조합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국세청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2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해 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주주의 일반원칙)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상식의 관행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3조 (임원의 경과조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관이 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014년 3월 25일 창립총회 제정
2018년 04월 06일 4차정기총회 개정
(회계년도,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21년 03월 27일 6차 정기총회 개정
(출자금 납입총액, 주사업 추가 및 변경)

「별첨4」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선거관리위원회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임원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과 임원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 (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와 자격심사
3. 선거인과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공고 3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5분의1,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이중추천의 금지)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2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 제1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7조 (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이사와 감사의 선거)
①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와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1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5년 4월 28일 1차 정기총회

「별첨5」　제7차 정기총회 조합원 명부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1	강옥정	직원조합원	18	김미영	직원조합원	35	김원자	직원조합원
2	강효숙	직원조합원	19	김미정	직원조합원	36	김월옥	직원조합원
3	강효순	직원조합원	20	김부기	직원조합원	37	김은정	직원조합원
4	권미정	직원조합원	21	김선순	직원조합원	38	김재미	직원조합원
5	권심화	직원조합원	22	김성례	직원조합원	39	김정화	직원조합원
6	권종화	직원조합원	23	김성림	직원조합원	40	김진선	직원조합원
7	김경자	자원봉사 조합원	24	김세정	직원조합원	41	김진연	직원조합원
8	김경하	직원조합원	25	김순자	직원조합원	42	김태진	자원봉사 조합원
9	김광수	직원조합원	26	김애경	직원조합원	43	김화영	직원조합원
10	김교숙	직원조합원	27	김애숙	직원조합원	44	김효임	직원조합원
11	김균식	직원조합원	28	김양임	직원조합원	45	김희선	직원조합원
12	김금자	직원조합원	29	김연중	직원조합원	46	나오숙	후원조합원
13	김덕순	직원조합원	30	김연희	직원조합원	47	남종식	직원조합원
14	김령	직원조합원	31	김영진	후원조합원	48	노성자	직원조합원
15	김명숙	직원조합원	32	김영화	직원조합원	49	민남조	직원조합원
16	김명희	자원봉사 조합원	33	김오이	직원조합원	50	박동운	직원조합원
17	김미애	직원조합원	34	김용인	직원조합원	51	박미옥	직원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52	박복례	직원조합원	72	손지경	직원조합원	92	유모개	자원봉사 조합원
53	박분연	직원조합원	73	송민정	직원조합원	93	유민순	직원조합원
54	박소영	직원조합원	74	송복자	직원조합원	94	유정순	자원봉사 조합원
55	박송화	직원조합원	75	송성아	직원조합원	95	윤기옥	직원조합원
56	박숙자	직원조합원	76	송영숙	직원조합원	96	윤미영	직원조합원
57	박옥자	직원조합원	77	신강순	직원조합원	97	윤영애	직원조합원
58	박옥희	직원조합원	78	신소정	직원조합원	98	윤태권	직원조합원
59	박이숙	직원조합원	79	신윤도	직원조합원	99	이경숙	직원조합원
60	박지후	직원조합원	80	신윤아	직원조합원	100	이경주	생산자조합원
61	박현희	직원조합원	81	안숙희	직원조합원	101	이금옥	직원조합원
62	박희숙	직원조합원	82	안정열	직원조합원	102	이막례	직원조합원
63	방춘분	직원조합원	83	안정임	직원조합원	103	이명수	직원조합원
64	백승여	직원조합원	84	안현여	직원조합원	104	이미숙	직원조합원
65	서연실	직원조합원	85	양동숙	직원조합원	105	이복여	직원조합원
66	서영란	직원조합원	86	양쌍희	후원조합원	106	이성자	직원조합원
67	서원자	직원조합원	87	오미경	직원조합원	107	이성재	직원조합원
68	서재순	직원조합원	88	오순자	직원조합원	108	이연주	직원조합원
69	손유경	직원조합원	89	오영옥	직원조합원	109	이영례	직원조합원
70	손점순	직원조합원	90	오영은	후원조합원	110	이영숙	직원조합원
71	손정란	직원조합원	91	우호영	직원조합원	111	이이순	직원조합원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번호	성명	조합원유형
112	이재순	직원조합원	133	정경수	후원조합원	154	최종원	직원조합원
113	이정민	직원조합원	134	정성자	직원조합원	155	한근애	직원조합원
114	이정용	직원조합원	135	정순자	직원조합원	156	한미숙	직원조합원
115	이정임	직원조합원	136	정연자	직원조합원	157	한현규	직원조합원
116	이정자	직원조합원	137	정용숙	직원조합원	158	함금순	직원조합원
117	이창희	직원조합원	138	정진숙	직원조합원	159	함정균	이용자조합원
118	이혜영	직원조합원	139	정해경	직원조합원	160	허명자	직원조합원
119	임명숙	직원조합원	140	조선숙	직원조합원	161	황영자	직원조합원
120	임세엽	직원조합원	141	조성자	직원조합원	162	황윤경	직원조합원
121	임숙현	직원조합원	142	조신자	직원조합원	163	황인순	직원조합원
122	임재임	직원조합원	143	조용임	직원조합원	164	황창미	직원조합원
123	임정숙	직원조합원	144	조태순	직원조합원	165	황희옥	직원조합원
124	장경혜	후원조합원	145	주선희	직원조합원	166		
125	장은순	직원조합원	146	천영심	직원조합원	167		
126	장은희	직원조합원	147	최경해	직원조합원	168		
127	전병조	직원조합원	148	최미경	후원조합원	169		
128	전복재	직원조합원	149	최미자	직원조합원	170		
129	전연희	직원조합원	150	최윤영	직원조합원	171		
130	전지원	직원조합원	151	최재임	직원조합원	172		
131	전지혜	직원조합원	152	최정숙	직원조합원	173		
132	전춘여	직원조합원	153	최종두	직원조합원	174		

「별첨6」 2022년 5년 근속장려포상 예정자 명단

목적 : 장기근속 조합원(직원) 포상을 통해 노고에 대한 격려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조합의 소속감을 제고하고자 함

대상 : 2014년 03월25일 조합 창립일 기준으로 해당년도 기준일에 5년이상 해당되는 조합원

근거 : 2020년 5월23일 40차 이사회 결정

2022년 04월15일 지급예정

순번	사업팀	이름	성별	입사일	기준일	근속년수
1	장애인	백승여	여	2016-04-11	2022-03-31	5년11월
2	장애인	이정임	여	2016-06-07	2022-03-31	5년9개월
3	장애인	김미영	여	2016-07-01	2022-03-31	5년8개월
4	장애인	김금자	여	2016-07-28	2022-03-31	5년7개월
5	장애인	강효숙	여	2016-11-01	2022-03-31	5년4개월
6	장애인	윤미영	여	2016-11-07	2022-03-31	5년4개월
7	장애인	박송화	여	2017-01-01	2022-03-31	5년2개월
8	장기요양	정성자	여	2017-01-01	2022-03-31	5년2개월
9	장애인	윤태권	남	2017-01-20	2022-03-31	5년2개월
10	장애인	서영란	여	2017-02-01	2022-03-31	5년1개월
11	장애인	임정숙	여	2017-02-18	2022-03-31	5년1개월